

통관 가이드라인

고객님의 통관 경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 드립니다. 한국을 오가는 통관 규정, 제한 사항, 금지 품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수입통관 지침서를 참고하십시오.

본 안내문에서는 패키지를 한국으로 발송하기 전에 불필요한 통관 문제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사항을 소개합니다.

본 안내문은 고객 참고용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FedEx 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신뢰성, 유용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같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보증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FedEx 는 본 안내문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입통관 지침 ▶ (Updated 2021-07-08)

I. 수입 통관 목록

- A. [목록통관 대상](#)
- B. [배제대상](#)

II. 특별 통관 관련 법규

- A. [식물방역법](#)
- B. [가축전염병예방법](#)
- C. [전파법](#)
- D.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E.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F. [식품위생법](#)
- G. [약사법](#)
- H. [의료기기법](#)
- I. [화장품법](#)
- J. [화학물질관리법](#)
- K.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L. [CITES](#)

III. 관세 감면

- A. [재수입](#)
- B. [재수출 조건부 수입](#)
- C. [사업자 샘플 & 개인소액면세](#)

IV. 금지 물품

V. 참고 사이트

VI. 사업자 &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필수

- A.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B. [개인 통관고유부호](#)



I. 수입 통관 목록

A. 목록통관 대상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수입신고필증 미 교부)이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됩니다.

B. 배제대상 :

-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 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 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그 밖에 관세법 제 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II. 특별 통관 관련 법규

A. 식물방역법

식물검역대상: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검역을 받아야하며, 수입자가 식물검역을 신청하여 합격을 받으면 통관접수 가능)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 ▶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 휴대하거나 우편택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 ▶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지품:

수입금지품은 다음에 열거된 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식물, 지역, 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수입제한식물: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 흙 ▶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섞여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 ▶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식물과 살아있는 병해충

관련기관 및 연락처, 홈페이지: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 신청/접수 관련 ☎ 032-744-5554, 5566 / 054) 912-0616 ▷ 검역관련 ☎ 032-740-2072, 2086 ▷ 사이트 :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 www.pqjs.gokr/minwon/index.html
- ▶ 관세청 유니패스 온라인 민원신청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

B.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 ▶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 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지대상물품: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특정위험물질 단, 위의 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신고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수입동물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 검역신청서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수입동물검역신청 방법:



- ▶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go.kr>)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수입축산물 검역신청서(또는 검역제외신청서) → 접수
- ▶ 또는 유료 대행서비스 이용: 스타합동관세사 ☎ 010-4302-6290

수출 검역: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통관 서류:

- ▶ 수입: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관련기관 및 연락처: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 032-744-5551

C.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 ▶ 적합성평가 대상물품(방송통신기자재등): ▷ 방송통신기자재 ▷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 ▶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t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면제(요청면제)신청절차: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적합성 평가면제 확인신청을 해야합니다

- ▶ 관세청 UNI-PASS(<https://portal.customsgok.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 12호 서식) 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 회원가입 문의: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 ▶ 신청서 작성 방법:
 - ▷ 수입자: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위탁자(신청인):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신청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통관세관명: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면제신청사유: 법 제 58조 및 고시 제 18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면제확인번호: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사후관리기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 외로 사용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 구비서류는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해당 기자재의 정보(모델명, 수량, 금액, HS 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 신청기자재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규정 다운받습니다. ▷ 면제처리 기간: 1 일
- ▶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자가 이미 한국의 KC 인증을 받은 경우:
 - ▷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요건 신청 완료된 후 승인번호 전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절차: 관세청 유니패스(<https://portal.customsgok.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 ▶ 면제대상이 아닌 물품이 KC 인증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 중 한 곳으로 인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D.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자 적합성확인제도 개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 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입니다.

안전인증 기관: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564 www.ktre.kr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www.ktr.or.kr

안전인증 구비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제품시험 시료 :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안전확인 구비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 및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구비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 ▶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 17 호) ▶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18 호) ▶ 제품설명서 (사진을 포함) ▶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료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

수입 인증 면제(요청 면제) 신청 안내:

- ▶ 면제 대상인 경우:
 - ▷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요건(면제) 신청을 하고, 완료되면 승인번호 (16자리) 확인
 -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portal.customs.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전기용품 면제확인신청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자가 이미 한국의 KC 인증을 받은 경우 (한국의 다른 수입자가 받은 인증은 사용불가)
 -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portal.customs.go.kr> 공인인증서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 ▷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요건 신청 후 완료되면 승인번호 (16자리) 확인
- ▶ 관세법 제 226 조 및 지정고시 제 3조에 따라 안전인증서가 있더라도 위와 같이 통관 포털 유니패스를 통한 요건(면제)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E.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만 13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제품 중 주요 수입품목:

- ▶ 유아용의류 (신장 86 cm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 ▶ 완구 (만 13 세이하) ▶ 학용품 (연필, 크레용, 색연필, 오일파스텔 등)
- ▶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보호용품, 스포츠 용품 등

KC 인증 대상품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4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완구 등 17개 품목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조건:

-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 제 17 조 제 10 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 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시험 및 검사 연구기관:

- ▶ KOTIT 시험연구원 www.kotiti-global.com/ko/index.do ▶ FTI 시험연구원 www.ftire.kr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ire.kr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drel.kr ▶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www.kats.go.kr

F.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법:

-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를 받아야 합니다.
- ▶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신청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신청

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

수입식품 검역 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수입식품 검역 비대상:

-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 식품등
- ▶ 개인(여행자, 국제우편물, 국제 특송화물):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 식품 등

-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 식품 등
-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 식품 등
- ▶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사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하는 수입식품
- ▶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검역 검사 종류:

-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최초로 수입시)
- ▶ 무작위 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식품검역 신청 방법:

- ▶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신청서검색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선택 → 신청서명에서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선택 → 다음 기본사항 선택 (본신고/사전시고를 구분하여 선택 신고제품구분: 가공식품 선택 신고기관: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선택)
- ▶ 다른 사항은 고객센터서 식품 검역을 위해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인, 수입신고인, 해외제조업소, 수출업소, 포장장소, 제조가공업자, 신고일반 등을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 검사(반입)장소 입력시에는 보관창고코드 : 04077008 / 보관창고명 : 페더럴익스프레스스코퍼레이션 보세창고 정보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관련부서: 수입식품과)

G. 약사법

적용대상물품 및 관련기관:

- ▶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약품, 한약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동물용 의약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 ▷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 구호용 ▷ 제조시공용 ▷ 연구시험용 ▷ 견본용 ▷ 소비자조사용 의약품 및 화장품
 - ▷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해외수탁제조약품의 원료의약품)
- ▶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관
 - ▷ 관할 시도지사,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도지사도 추천 가능
 - ▷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자가치료용, 구호용(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함)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 및 해외수탁제조약품의 원료의약품

통관서류:

- ▶ 의약품 및 의약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견본용, 연구용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 ▶ 한약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한약제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 ▶ 동물용 의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의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품목별 통관절차:

-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 ▷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한 후 세관에 제출합니다.
 - ▷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
 - ▷ 의약품.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합니다. ✓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한 후 세관에 제출합니다.
 - ✓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검정을 받습니다.
 - ▷ 원료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한 후 세관에 제출합니다.
 - ▷ 한약재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규격품대상의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 ✓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습니다.

H.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범위

-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관련기관

- ▶ 사람용 의료기기: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 ▶ 대한치과기재협회 (www.kodda.co.kr) ▶ 동물용 의료기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www.ajac.go.kr), 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 ▶ 기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www.nidsa.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itrek.com)

통관서류:

- ▶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동물용 의료기기: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 의료기기 및 추천기관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임상승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또는 제조수입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제조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는 외국에 전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 제품개발 등을 위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 제품의 실물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의료기기 ▷ 의료기기 품목지정, 등급심사,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심사 등 심사용 의료기기 ▷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시험검사 등을 의뢰받아 수입하는 의료기기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구호용 의료기기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또는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I. 화장품법

수입, 통관 방법:

- ▶ 수입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化妆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 한국화장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받아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 기능성 化妆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化妆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 ▷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 구호용 ▷ 제조시공용 ▷ 연구시험용 ▷ 견본용 ▷ 소비자조사용 의약품 외 화장품
-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의 化妆품: 요건면제추천서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관
 - ▷ 관할 시도지사,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도지사도 추천 가능 ▷ 한국화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자가치료용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

통관서류:

- ▶ 化妆품: 한국화장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의 化妆품: 요건면제추천서

관련 기관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s.go.kr) ▶ 한국화장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J.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확인:

- ▶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제출 <https://oskma.or.kr>)
 -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 ▶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출 : oskma.or.kr)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서류:

- ▶ 제한물질: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수입탈크 원석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 유독물질: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관련기관 및 연락처:

- ▶ 환경부 화학안전과 (www.megokr)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www.nier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ma.or.kr)

K.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

- ▶ 세균 및 진균 ▶ 바이러스 및 프리온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

- ▶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 ▷ 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통관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관련기관 및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www.mchw.go.kr)

L. CTES

해당물품 예시:

악어, 도마뱀(시계줄, 핸드백, 벨트), 상아, 타조, 비단뱀, 친칠라(코트), 표범 (카펫), 호랑이 뼈, 사향, 목향 뿌리(중국 한약재), 북극곰, 공작 깃털, 산호, 로즈우드, 마호가니, 난초, 선인장, 캐비아(추출물 포함).

주의:

가족 또는 털 제품은 CTES 확인을 위한 학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구비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의 CTES 수출허가서 원본

수입자 구비서류:

유역(지방)환경청장의 CTES 수입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

III. 관세감면

A. 재수입

관세의 감면제도 근거규정: 관세법 근거 (제 99 조 재수입면세, 제 101 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제 99 조 재수입면세 대상

- ▷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제 101 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대상

-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 85 류 및 제 90 류 중 제 9006 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 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의 비용이 포함됨)
 - ✓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수입자가 제 1호 및 제 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 4호 및 제 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 4호 및 제 5호의 비용은 제 1호 및 제 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함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

비즈니스 상황 별 재수입 세금 & 재수입 면세 적용 상황

▶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 101 조 2 호 적용)

- ▷ 감면: 수출입 물품 가격
- ▷ 과세: 왕복운임 + 수리비용에 대한 관부가세
- ✓ 예외적으로, 제품이 하자 보수 보증기간(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중에 고장이 나서 무상수리를 받는 경우에는 수리비 및 왕복운임에 대해 관부가세 면세 가능
- ✓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관계없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 재 수입 되는 경우, 수리비 및 왕복운임에 대해 관부가세 면세 가능 (21년 3월 26일 기준 미국,호주,캐나다,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칠레,중미(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 ✓ 단, 세금 면세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정식수출신고 필수 (증빙서류를 재수입신고시 제출 해야함)
- ✓ 수출입 간의 동일한 물품이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세관에 증빙하기위에 제품의 시리얼번호 또는 해당 물품을 특정화 할 수 있는 고유번호, 일련번호 등을 갖고 있어야함

▶ 불량품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 99 조 1 호 적용):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중, 외국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 면제적용 가능.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 조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될 수 있음)

▶ 전시회 등 참가 물품의 재수입 (관세법 제 99 조 1 호 적용)

전시했던 물품이 행사 목적에 따라 사용된 이후, 2년 이내에 우리나라로 재 수입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가능(단, 수출 목적에 맞는 수출신고필증 필요)

B. 재수출 조건부 수입

관세법 근거: 제 97 조 재수출면세

▶ 관련법령

- ▷ 관세법 제 97 조, 시행령 제 114 조제 115 조제 116 조, 시행규칙 제 50 조제 51 조
- ▷ 관세법 제 97 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 재수출기간: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 115 조)

-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 ▷ 박람회,전시회,포럼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담보제공: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법 제 108 조)

- ▷ 금전담보: 감면받는 관세액(100%) (법 제 25 조)
- ▷ 그 밖의 담보: 감면받는 관세액(100%) + 1 차가산금(3%)
- ▷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고시 제 12 조제 1 항제 4 호)

▶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가산세: 기간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20% 단, 5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 ▶ 재수출할 때 물품의 세번 부호나 기타 성질이 변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물품의 고유식별부호(S/N)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입신고시 제품의 S/N 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통해 S/N 를 부여하거나 현품의 사진을 별첨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 ▶ 반입사유서 ▶ 사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반입사유, 담보종류, 물품 S/N, 담당자 정보,
- ▶ 재수출예정일 (최소 3개월 ~ 1년 이내의 기간 명시해야 함, 이때, 달의 마지막 날로 설정해야 함, 예: 12월 31일 재수출 예정)
- ▶ 담보제공신청서 (페덱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 통장사본(현금담보)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증권담보)



C. 사업자 샘플 & 개인소액면세

회사:

샘플(SAMPLE) 면제 대상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 45 조 제 1 항)

-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 ▶ 과세가격(CIF)이 미화 250 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개인:

- ▶ 개인소액면세 기준 (관세법 제 94 조 제 4 호):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 개인 합산과세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의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택승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로 도착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됨
 - ▷ 하나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 하는 경우
 -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AWB 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 불, 미국은 200 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 ▷ 정식수입신고대상이 되더라도 합산한 총 물품가격 미화 150 불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IV. 금지 물품

제 234 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V. 참고 사이트

- ▶ 관세청: www.customs.gov.kr ▶ 관세청 UNIPASS: <https://portal.customs.gov.kr> ▶ 관세청 FTA 포털: www.customs.gov.kr/ftaportalkor/main.do
-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전용 사이트: <https://p.customs.gov.kr>
- ▶ 동식물검역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www.ajag.go.kr
- ▶ 보호야생동물(CITES) 관련
 - ▷ 환경부: www.meg.go.kr ▷ 금강유역환경청: www.meg.go.kr/gg ▷ 낙동강유역환경청: www.meg.go.kr/ndg ▷ 대구지방환경청: www.meg.go.kr/daegu
 - ▷ 새만금지방환경청: <http://www.meg.go.kr/smg/> ▷ 영산강유역환경청: www.meg.go.kr/ysg ▷ 원주지방환경청: www.meg.go.kr/wonju ▷ 한강유역환경청: www.meg.go.kr/hg
- ▶ 유해화학물질 관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련: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ctcre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crekr
- ▶ 전파법 대상물품 관련: ▷ 국립전파연구원 <http://www.itr.go.kr>
- ▶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 대상물품 관련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emti.org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i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 FTI 시험연구원: www.ftirekr
- ▶ 전기, 전파, 어린이제품 요건면제 관련: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www.kipskr>
-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v.kr ▷ 한국동물약품협회: www.kahpa.or.kr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clia.or.kr

VI. 사업자 &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필수

수출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지연 예방을 위해 수출입자 또는 대리인은 사전에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예시: 갑을병정 1981017)

- ▷ (직접) 신청 사이트: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v.kr>)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 ▷ (대리신청) 스타합동관세사무소
- ▷ 구비서류:
 - ① www.fedex.com/ko-kr/support/clearance/how-to-clear-customs.html#forms_Tab2 통관고유부호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후 작성 (서명인정불가, 직인날인 필수)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FedEx 운송장 또는 인보이스



▷ 신청메일

수입: entry@starcustoms.co.kr

수출: export@starcustoms.co.kr

▶ **개인 통관고유부호 (예시: P111234567899)**

▷ 신청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간편인증을 통해 신규발급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국적, 성명으로 대체 가능.